

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지금부터 「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본 폐지조례안은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의해 접수되었으며('23.3.8.), 총 3만 2천 802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었고,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만 7천 353명의 유효서명이 검증 완료(' 24.4.16.) 되었습니다.

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에서 동 폐지조례안의 수리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장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
□ 동 조례안에 대한 청구인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

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
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,
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 및
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,
의원님들께서는 동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살피시어
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